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14.11.4.] [대통령령 제25705호, 2014.1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 - 719 - 3404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제2조 삭제 <2012.2.3.>

제3조 삭제 <2012.2.3.>

제4조 삭제 <2012.2.3.>

제5조 삭제 <2012.2.3.>

제6조 삭제 <2012.2.3.>

제7조 삭제 <2012.2.3.>

제8조 삭제 <2012.2.3.>

제9조 삭제 <2012.2.3.>

제10조 삭제 <2012.2.3.>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2.2.3., 2014.11.4.>

[본조신설 2007.7.3.]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2.3.>]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명령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 휴업 등 신고의 수리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제6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
5.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법 제23조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및 폐기 등의 처분
7.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8.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의 재교부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7.3.]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3.3.23.>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및 폐기 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2.3.]
[제13조에서 이동 <2012.2.3.>]

부칙 <제16869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8호,2007.7.3.>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0>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14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2570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2.2.3>

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 및 2)의 경우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단위: 천원)

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0,000 미만	30
20,000 이상 – 50,000 미만	60
50,000 이상 – 70,000 미만	90
70,000 이상 – 100,000 미만	120
100,000 이상 – 150,000 미만	150
150,000 이상 – 200,000 미만	190
200,000 이상 – 300,000 미만	230
300,000 이상 – 500,000 미만	270
500,000 이상 – 700,000 미만	310

700,000 이상 – 1,000,000 미만	350
1,000,000 이상 – 2,000,000 미만	400
2,000,000 이상 – 3,000,000 미만	450
3,000,000 이상 – 5,000,000 미만	500
5,000,000 이상 – 7,000,000 미만	550
7,000,000 이상 – 10,000,000 미만	600
10,000,000 이상 – 20,000,000 미만	660
20,000,000 이상 – 30,000,000 미만	720
30,000,000 이상 – 40,000,000 미만	780
40,000,000 이상	840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100
나.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100
다.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50
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50
마.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50
바.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호	100